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권 32~32p 32~33줄 (4)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	오타	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<u>피한정후견인</u> 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3조 제4항).	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<u>한정후견인</u> 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(민법 제13조 제4항).
733~733p 번호 : 02	해설	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)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을 넘지 못한다.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 : 1, ㄴ : 3천분의 1, ㄷ : 1천분의 90 해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(징수법 제25조 제3항).	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. (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()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월별 보험료의 ()을 넘지 못한다.		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② ㄱ : 1, ㄴ : 6천분의 1, ㄷ : 1천분의 50			
해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이 <u>지날</u> 때마다 채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<u>6</u> <u>천분의 1</u>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 채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<u>1천분의 50</u> 을 넘지 못한다(징수법 제25조 제3항).			
수정 사유	법개정에 따른 수정		
742~742p 해설 번호 : 19	해설	④ (X)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<u>경과할</u> 때마다 채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<u>1천분의 1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(징수법 제25조 제1항).	④ (X)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<u>제16조의7,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</u>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<u>지날</u> 때마다 채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<u>1천 500분의 1</u>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 <u>이 경우 연체금은 채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</u> (징수법 제25조 제1항).
		수정 사유	법개정에 따른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